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9
----------	-----

2024. 4. 30.(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3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민영완)

가. 제안사유

-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잘못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수정·반영(안 제7조)

- 성과평가 예외 대상 사무에 관한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수정
(안 제17조1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및 제8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잘못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 등 5개 시·도가 위원 자격 요건을 규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기
업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임.
- 이에 따라 안 제7조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자 및 대
학 부교수 이상 등으로 명시한 것은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
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
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9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잘못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수정·반영(안 제7조)
- 성과평가 예외 대상 사무에 관한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수정(안 제17조1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및 제8조의2)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의회””를 “이하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회”를 “도의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회의 동의를 받은”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의”를 “도의회의”로, “의회 동의”를 “도의회 동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둔다”를 “구성·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행정국장

2. 해당 위탁사무 담당 실·국·본부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해당 위탁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 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u>의회</u>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u>의회</u>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u>의회</u>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 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u>의회</u> 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u>의회</u> 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p> <p>1. · 2. (생략)</p> <p>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p> <p>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p>	<p>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 ----- ----- ----- -----이하 “도의 회” -----.</p> <p>② ----- ----- ----- <u>도의회</u>-----.</p> <p>----- <u>도의회의 동의를 받은</u> ----- ----- <u>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u> -----.</p> <p>③ ----- ----- ----- <u>도 의회의</u> ----- ----- <u>도의회 동의</u>-----.</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p> <p>① ----- -----</p>

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 구성·운영한다.

② -----

-----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행정국장

2. 해당 위탁사무 담당 실·국·본부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축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해당 위탁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신 설>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 5. (생략)

제17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
-- 위원회-----

경우에는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성과평가) ① -----

----- . ---- 제5조제3항 ----

의하여 따로 평가를 받는 사무
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잘못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은영